

의안번호 제53호

#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윌일	2017. 6. 12.

#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53호 제출연월일: 2017. 6. 12. 제 출 자: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감차 계획을 수립한 후 보상을 통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감차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우려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15.12.31) 됨에 따라,
- 나.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법률 위임조례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목적 개정(안 제명, 안 제1조)
- 나.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규제심사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2017. 4. 12.~ 2017. 5.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충청남도소관부서 : 도로교통과(041-635-4684)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1조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3호"로 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신규면허) 논산시장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 관	부서	}		성	명
입	도로	교통	과장	김	기	봉
ㅂ 안	교통	지 원	팀장	조	영	국
자	담	당	자	장 (04	윤 1-746	석 -6283)

### □ 신·구조문대비표

안 했 개 혅 정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 제1조(목적) -----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 제15조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호----. 〈신 설〉 제4조(신규면허) 논산시장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 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O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O「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3. 미첨부 사유
- O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음.
- 4. 작성자

# 도로교통과장 김기봉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 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 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5.27., 2015.6.22.〉
-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09.5.27., 2013.3.23., 2015.6.22.>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 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6.22., 2017.3.21.〉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 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u>개인택시운송사업자</u>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5.11.30.〉[본조신설 2009.11.27.]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u>누구든지 신규 택시</u>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u>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u>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와 소속 시장·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 1. 과잉 공급 규모
  - 2. 연도별 감차 규모
  - 3. 감차보상금의 수준
  -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 5. 연도별 감차재워 규모
  - 6. 기타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 ※ 우리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가 없음

-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 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 수가 180점 이하일 것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 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일 것
-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

- 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 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 할수 없는 경우
-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4. 61세 이상인 경우
-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 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 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
-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 □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
  - 3.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료우대자 등을 위한 행사
  -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참고 2 타시군 조례 제정현황

시군	공포일자	조례명	조문
금산군	2016.12.30.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4조
속초시	2016.12.7.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제2조
화순군	2016.12.30.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강진군	2016.12.29.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4조
완도군	2016.12.31.	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5조
함평군	2016.12.31.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6조

# 참고 3 법제처 법률 위임 조례(규제완화조례) 통보사항

법령명	조문	공포일자	법령위임내용	필수조례 여부	규제완화 여부
스포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 체육 관광부〉	제14조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2016.8.4.	(제14조제4항)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경 및 면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임의조례	0
택시 송 사업에 발전에	제10조 (신규 택시운송 사업면허 의 제한 등)	20151231	(제10조제1항제3호) 연도별 감 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임의조례	Ο

## 참고 4 │ 개인택운송사업면허 참고자료

#### 가. 논산시 적정 택시대수

- 택시총량산정 용역 결과
  - (1) 용역당시 택시대수 : 461대
  - (2) 적정 택시대수 : 308대
  - (3) 감차대상 택시수 : 153대(33.19%)
- 감차규모
  - (1) 감차대수 조정 : 153대 ⇒ 92대
  -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 방식)
    - ② 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전체 택시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
    - ④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 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 택시총량산정 용역의 목적
  - 자동차증가 등 교통여건 변화로 택시수요는 지속적 감소추세인 반면
  - 면허제 특성 및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택시공급이 과잉된 상태
  - 따라서 무분별한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적정 택시대수 유지 ⇒ 택시산업 발전 도모
- 택시총량산정 용역의 법적근거
  -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
  - 지침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도교통부. 2014.1.24.)
  - 용역내용
    - 기간 : '14. 2. 21 ~ '14. 6. 25
    - 업체 :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금액 : 17,900천원

## 나. 논산시 택시업체 현황

#### [합계 454, 일반 218 + 개인 236]

업 체 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대표전화	차량 대수	주 소	
/ス) コームトウム	사장							733-1001	30	은진 교촌 478	
(주) 남양운수	부장							733-1001	30	근선 파는 4/0	
동광운수(자)	사장	0]						742-2242	24	은진 연서500-24	
68 표구(사)	부장	성						742-2242	∠ <del>4</del>	근선 천시300-24	
시범운수(주)	사장	(٥						735-3963	43	취암동1039-1	
성신통운(합)	사장	김						732-3122	24	강산동289	
기의 F 기 / Z \	사장	0]						740 6405	27	은진 교촌286-2	
성화통상(주)	부장	0]						742-6405	27	근선 포는200-2	
(합)양일운수	사장	(٥						742-1456	23	연무 마산700-14	
황산택시(주)	사장							735-7429	47	부적 마구평468-5	
개인택시 논산시지부	지부장	٥]						T22 222 1	22.6	7] 1] T <b>2</b> 00	
	사무 국장	김						732-2324	236	강산동 <b>2</b> 89	

### 《논산시 연도별・업종별 감차대수》

(단위 : 대)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합계	92	10	16	19	23	24	
개인	55	6	9	12	14	14	60%
법인	37	4	7	7	9	10	40%

◎ 택시자율감차 실적

(1) 2016년 하반기 : 7대(개인 5, 법인 2)

(2) 2017년 상반기 : 9대(개인 9) 예정

# 다. 양도가 가능한 경우

①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라.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 택시총량 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
  -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②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③ 제②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상속인이 개인택시면허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

#### 마. 개인택시면허 자격조건

- ①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경력이 있는 자
- ③ 국내에서 ①에 따른 운전경력과 ②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이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④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 수가 180점 이하일 것

####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09.5.27. / 시행2009.11.28.〉

####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9733호, 2009.5.27./시행 2009.11.28.>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 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